

#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특별공급 안내문

## ※ 특별공급 신청시 유의 사항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재당첨제한,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는 추천기관에서의 선정통보와 무관하게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가 개별 공고되므로 해당 주택형별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특별공급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자료로 인허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e편한세상' 홈페이지 ([www.daelim-apt.co.kr](http://www.daelim-apt.co.kr))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원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4층 ~ 지상33층, 12개동 총 1,199세대 중 일반공급 3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공급세대수

주택형	세대수	특별공급분	비고
59A	15	1	5세대
59B	13	1	
59C	1	0	
59D	31	3	
84A	85	8	19세대
84B	5	0	
84C	69	6	
84D	2	0	
84E	25	2	
84F	32	3	
84G	5	0	
84H	5	0	
84I	2	0	
113A	31	0	-
113B	59	0	
계	380	24	

## □ 공급일정

구분	일정 (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17년 12월 07일	e편한세상 홈페이지
주택전시관 오픈	2017년 12월 08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번지
특별공급 접수	2017년 12월 12일	<b>접수시간 : 10시~14시</b> , 주택전시관
동·호수 발표	2017년 12월 21일	e편한세상 홈페이지
계약체결	2018년 01월 03일 ~ 05일	주택전시관

※ 상기 일정은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① 청약예금 : 가입 후 6개월 경과, 신청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 이상
- ② 청약부금 :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일에 납입한 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단, 신청 전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면적 선택)

구분	광주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1주택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신청시 유의사항

- 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일반공급 전환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조정대상주택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봄.(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07)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 바람.(최저층은 1층임)

## □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당사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특별공급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분만 당첨자로 확정·관리 되며 적격자에 한해 계약 체결함.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동·호수 변경은 불가함.

### Ⅲ. 청약접수시 구비서류

#### □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청약접수가 불가함.

#### □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		특별공급신청서		당사 모델하우스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		당사 모델하우스에 비치
○		해당 기관의 추천서		또는 선정통지서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APT2you 홈페이지 (단, 국가유공자,장애인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거주기간 등 인정여부 확인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상기 서류外 ①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청약 위임용)
- ③대리인의 도장,                      ④ 대리인의 신분증

